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도시하천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계획과 변경고시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핵심 기술요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시행 계획과 변경 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시행계획과 변경 사항에 대한 필수 고시사항에 대한 세부 항목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수행체계 개선 규정을 통하여 침수방지 시설 사업의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 2)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 3)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변경 내용
- 2)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변경 내용
- 3)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한 변경 사항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3) 공사예정공정표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내용
-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변경 내용
- 3)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내용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집행계획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 ----- ----- ----- -----.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략) 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u><신설></u> <u><신설></u> <u><신설></u> 다. (생략)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u>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u> 2) <u>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u> 3) <u>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 홍수량 · 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u> 다.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략) 나.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u><신설></u>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u>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변경 내용</u>

<신 설>

<신 설>

다.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
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신 설>

<신 설>

2)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

분계획 변경 내용

3)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

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한 변경 사항

다.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

<신 설>

다. (생 략)

2.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생 략)

② (생 략)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 ①·② (생 략)

<신 설>

한다)

3) 공사에정공정표

다.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

정연월일 변경 내용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

함한다) 변경 내용

3) 공사에정공정표 변경 내용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집행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 제3항-----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1 - 7655